

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의4] <개정 2011.11.1>

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·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
(제6조제1항,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)

계급		지 도 관	지 도 사
직렬	직류		
농촌지도	전 직류 (농촌생활 직류는 제 외한다)	농업계통의 학(수의학을 포함 한다)을 전공한 사람	농업계통(수의학을 포함한다) 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 람
	농 촌 생 활	농업계통의 학(수의학을 포함 한다), 소비자학, 가족학, 식 품학, 식품가공학, 교육학(가 정교육학을 포함한다), 관광 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	농업계통의 학(수의학을 포함 한다), 소비자학, 가족학, 식 품학, 식품가공학, 교육학(가 정교육학을 포함한다), 관광 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
어촌지도	어 촌	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	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 학 이상 졸업한 사람

비고: 위 표에서 “전공한 사람”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전문대학은 제외한다)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